

신용카드리뷰

The Credit Card Review

Vol 16-2(2022년 6 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금융시장의 변화

이 천 우

주식회사 위너아이 대표이사

김 상 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재 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핀테크융합전공 석사과정



한국신용카드학회
Korean Creditcard Academic Society

www.kci.go.kr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금융시장의 변화*

이 천 우**

주식회사 위너아이 대표이사

김 상 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재 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핀테크융합전공 석사과정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지급결제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지급결제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쟁점들도 검토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산업, 이용자, 인프라, 금융안정 측면에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진과제 내에 세부사항들이 들어있다. 이러한 세부사항 중에서도 망안전, 기존사업자 배제,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금융시장에서의 제조와 판매 분리, 국제기준의 준수, 정보독점의 문제, 글로벌 기업 진출 문제 및 규제방향 충돌, 동일서비스와 동일규제 측면에서의 수수료율, 일부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기업의 시장 우회 침투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법의 일부가 바뀌거나 관련 법의 일부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핵심 단어: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시장, PSD2, 핀테크, 규제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제1저자) 경기도 고양시 성신로 97 상가동 104호, Tel: 02)3275-3780,
E-mail: dcd88@naver.com

*** (교신저자)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연구관 505호, Tel: 02)760-8038,
E-mail: brainkim75@hansung.ac.kr

**** (공동저자)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3층 33316호, Tel:
02)760-0736, E-mail: jaejaee@g.skku.edu

I. 서론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급결제시장은 IT의 발달과 더불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국가나 지역 등에 다르게 지급결제시장은 바뀌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이른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과 같은 기술기반 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이고 금융업에서 가장 빨리 적응가능한 지급결제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금융기관들이 영위하던 부분들에 기술기반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부터 시작해서 금융업 내에서도 기존의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카드, 보험,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빅테크나 핀테크가 진입해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편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정부도 제도 개편을 통해 빅테크나 핀테크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해주고 있다. 2020년에 지급결제 부문에서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논의하고 빅테크나 핀테크 등 비금융 기술기반 기업이라도 최소 자격요건을 갖추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2020년 7월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지급결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논의도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또는 어떠한 쟁점 사항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지급결제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 쟁점 검토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을 살펴본다. 여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한 내용의 변화와 추후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마지막 5장에서 시장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II. 지급결제시장 현황

지급수단은 국가마다 다르며 시장의 발전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넓은 범위에서 카드가 있다. 신용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신용카드,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계좌 잔액 내에서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기록된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한 선불카드가 있다. 현금IC카드는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잔액 내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 정산망을 활용한 별도의 현금IC카드 가맹점에서 이용될 수 있다.

카드 외의 다른 지급결제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선불로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송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이중의 간편결제는 일명 ○○페이로 불리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의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나 컴퓨터 등에 미리 저장하고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단말기 접촉 등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전자화폐는 주화나 지폐를 대체하는 현금의 일종으로 카드나 전자기기에 저장한 화폐 가치 내에서 결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지급결제수단인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이며 어음(수표)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며 발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그림 1> 지급결제수단의 종류

카드 주	신용카드	신용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구매 이후 결제하는 카드
	체크카드	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잔액 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기록된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
현금IC카드		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잔액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로, 별도 현금IC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금융결제원 정산망 활용)
선불전자지급수단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간편결제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 PC 등에 미리 저장해 두고, 거래 시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전자화폐		주화나 지폐를 대체하는 현금의 일종으로 카드나 전자기기에 저장한 화폐 가치 내에서 결제
현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
어음(수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며 발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급결제수단의 유형에서 카드 결제 비중 높게 나타난다. 2021

년말 기준으로 최종소비지출 중 지급결제수단에서 카드의 비중은 79.6%로 매우 높다. 신용카드 비중은 2015년 58.2%에서 2021년 66.6%로 증가하였고 체크카드 비중도 2015년 12.7%에서 2021년 16.0%로 증가하였다.

<표 1> 지급결제수단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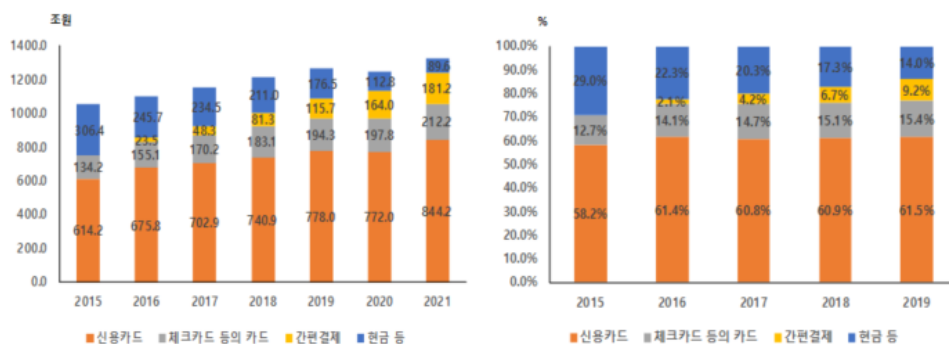
단위: 조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종소비지출	1,054.9	1,100.1	1,155.8	1,216.3	1,264.6	1,246.6	1,327.2
민간소비지출	804.8	834.8	872.8	911.6	935.9	897.4	952.5
신용카드	614.2 (58.2%)	675.8 (61.4%)	703.0 (60.8%)	741.3 (60.9%)	778.0 (61.5%)	772.0 (61.9%)	844.2 (63.6%)
직불카드	0.008 (0.0%)	0.005 (0.0%)	0.004 (0.0%)	0.002 (0.0%)	0.001 (0.0%)	0.001 (0.0%)	0.001 (0.0%)
체크카드	134.2 (12.7%)	155.1 (14.1%)	170.2 (14.7%)	183.1 (15.1%)	194.3 (15.4%)	197.8 (15.9%)	212.2 (16.0%)
선불카드	0.8 (0.1%)	0.8 (0.1%)	0.8 (0.1%)	0.8 (0.1%)	0.9 (0.1%)	6.2 (0.5%)	4.6 (0.3%)
현금IC카드	0.2 (0.0%)	0.3 (0.0%)	0.4 (0.0%)	0.5 (0.0%)	0.9 (0.1%)	0.8 (0.1%)	1.0 (0.1%)

자료: 한국은행, 재산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서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 증가 추세에 있다. 신용카드 결제 비율의 정체, 현금성 결제의 감소, 간편결제의 증가로 요약이 가능하다. 간편결제의 비중은 2021년 최종소비지출의 14.0%로 추정되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기반 간편결제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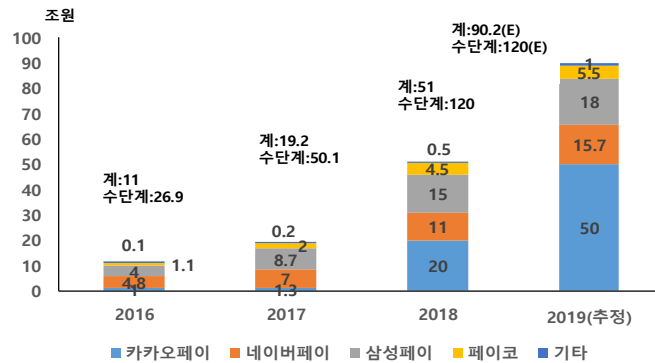
<그림 2>지급수단별 결제규모(좌) 및 비중(우)



자료: 한국은행, 재산출

개별 간편결제 기업의 공시가 모두 나지 않고 있지만 2019년에 간편결제는 이미 민간 최종소비지출의 12.9%로 추정되며,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였다. 여기서 현금과 개인체크(현금성) 내의페이결제는 2019년 5조 원으로 계좌충전 페이결제로 보인다. 현금과 개인체크(현금성) 선불은 2018년 3.9조 원, 2019년 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계좌이체(3.2조 원), 직불(0.06조 원)을 제외한 신용카드 페이사 경유 카드결제는 68조 원으로 추정된다. 보다 최근인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기반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폭증하였다. 2020년 상반기 전체 간편결제 결제액은 63.7조 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상반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결제액은 26.8조 원으로 추정된다. 네이버페이는 2020년 상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쇼핑·컨텐츠 결제에 12.5조 원이 발생하였다. 카카오페이도 이미 2020년 1분기 앱에서 결제, 송금, 투자 등을 포함한 거래액은 14.3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3> 국내 간편결제 거래액 추이



이러한 통계는 한국은행의 일별 간편결제 통계에서도 증가 추이가 확연하게 들어난다. 2021년 일별 간편결제 건수는 1,981만 건으로 전년대비 36.3%, 이용금액은 6,065억 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모바일기기나 컴퓨터를 통한 비대면결제가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면결제에서도 카드단말기나 QR 코드와 같은 실물 지급결제수단 대신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나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저장하고 거래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인식, 페이스ID 등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비중은 2019년 1월 41.2%에서 2021년 4분기에 46.3%까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 2> 국내 간편결제 이용현황과 연간 환산 금액

단위: 억원, 조원

			2018	2019	2020	2021
간편결제 이용금액			2,228.2 (81.3)	3,171.0 (115.7)	4,491.6 (163.9)	6,065.4 (221.4)
	전자금융업자		778.6 (28.4)	1,199.0 (43.8)	2,052.4 (74.9)	3,013.5 (110.0)
		(신용카드)	607.5 (22.2)	855.4 (31.2)	1,353.3 (49.4)	1,939.6 (70.8)
		(선 불)	102.4 (3.7)	244.7 (8.9)	568.0 (20.7)	884.9 (32.3)
		(계 좌)	68.6 (2.5)	98.9 (3.6)	131.1 (4.8)	189 (6.9)
	휴대폰결제 조사		609 (22.2)	898.5 (32.8)	1,070.4 (39.1)	1,376.2 (50.2)
	금융회사		840.6 (30.7)	1,073.5 (39.2)	1,368.8 (50.0)	1,675.7 (61.2)

주: 괄호는 연간 환산 금액

이러한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기술기업이나 소위 빅테크기업이나 핀테크기업과 같은 ICT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 은행, 증권, 보험, 여신 등 기존 금융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간편결제 서비스 조사 대상 업체는 46개사로 전자금융업자 30개, 휴대폰결제 조사 2개, 금융회사 14개로 나타나고 있다. 간편송금은 22개사로 전자금융업자 16개사, 금융회사 6개사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중에도 로드시스템(로드페이), 블루윌넷(Took), 지머니트랜스(지머니페이), 인스타페이(인스타페이) 등의 간편결제 기업과 지머니트랜스(지머니페이), 골프존(골프문화상품권) 등 간편송금 기업 등이 포함되었다.

<그림 4>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확대 내용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진출(21.6)
증권	• 카카오페이증권 설립 및 증권예약 계좌, 펀드 출시(20.2)	• 미래에셋대우 제휴 CMA출시(20.6)	• 토스증권 설립(20.11) • MTS 출시(21.2)
보험	•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추진	• NF보험서비스 설립(20.7)	
여신		• 미래에셋캐피탈 제휴 소상공인 신용대출(20.12)	

Ⅲ.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3.1 기존 제도의 변화

전자금융거래법이 바뀌기 전에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변화로 2019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해주고 있다. 2020년 지급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 촉진으로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논의하고 빅테크나 핀테크 등 비금융 ICT기업이라도 최소 자격요건을 갖추면 차액결제를 간접수행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기준을 변경하였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표 3> 최근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현황

	주요 내용	관련 법규
2019.1	ICT융합, 산업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2019.4	혁신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020.6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제도 정비	지급결제제도 운용·관리 규정
2020.7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전자금융거래법(국회논의 중)
2020.8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이용 활성화	데이터 3법
2020.8	P2P 업체의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10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통해 다양한 민간인증제도 허용	전자서명법

2020년 7월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현재 아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에 있다.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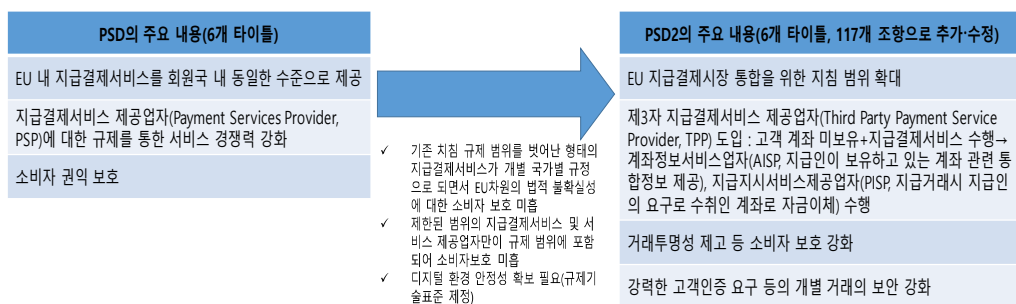
<표 4>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윤관석 의원 안	금융플랫폼에서 계좌 발급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전자지급거래청 산기관 신설
김병욱 의원 안	빅테크 외부청산기능 최소 정보만 정산기관이 처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금결제업 규제에서 제외
전재수 의원 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대상 확대
홍성국 의원 안	증권사 전산장애 투자자 피해시 가이드라인 마련
송언석 의원 안	간편결제사업자의 수수료 차별 금지

3.2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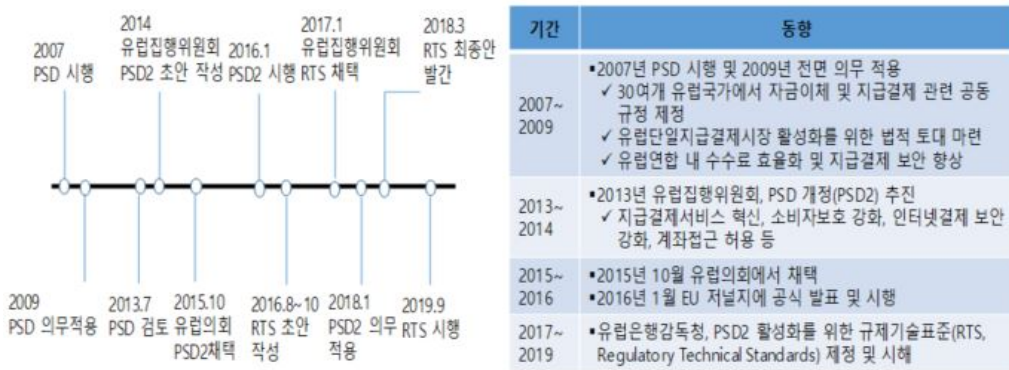
국내 디지털 금융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2007년 동법의 시행 이후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EU보다 빨리 도입했음에도 대응이 늦은 상황에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는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 「지급결제산업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 제정(2007) 및 시행(2009),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eDIS)」을 제정(2016)하였다. 「지급결제산업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2, PSD2)」 제정(2016) 및 시행(2018),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2020)하였다.

<그림 5> PSD와 PSD2의 주요 내용



PSD2가 도입되기까지 EU에서도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2007년 PSD 시행 이후에 적용, 검토 등을 거쳐 규제기술표준까지 제정된 단계이다.

〈그림 6〉 PSD2 도입 추진 경과(좌)와 동향(우)



이러한 PSD2 조문도 6개의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다. 타이틀 I에서 주제, 범위 및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대상기관, 적용범위, 예외, 정의를 하고 있다. 타이틀 II에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PSP)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지급결제기관(Payment Institutions)의 일반 원칙, 감독, 면제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공통조항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접근, 계좌접근, 금지사항을 다루고 있다. 타이틀 III에서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거래 투명성, 정보공개 요건을 다루고 있다. 타이틀 IV에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루고 있다. 공통조항으로 범위, 수수료, 적용면제 거래를 말하고 있으며 지급거래 인가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및 사용자 의무 등, 지급거래 실행으로 지급명령, 결제시간, 책임소재, 데이터보호, 리스크 등을 다루고 있다. 타이틀 V에서 위임규정 및 규제기술표준(RTS)을 다루며 타이틀 VI은 최종 조항이다.

3.3 추진 과제

정부의 추진 과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산업, 이용자, 인프라, 금융안정이다. 산업에서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하고 이용자에서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이 목표이며 인프라에서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을 하고 금융안정에서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7>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의 주요 내용

추진과제	목표	내용
산업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 (1-1)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도입 : 이용자의 지급지시(결제·송금)를 받아 금융회사 등에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고객자금 미보유) • (1-2)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2)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간소화 : 7개→3개 • (3) 진입규제 합리화 : 최소자본금 규제 완화 및 영업규모 증가에 따라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Small License+Sliding Scale) • (4-1)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 대금부족분에 한해 제한적인 신용 기반의 소액 후불결제(30만원) 기능 부여 • (4-2) 선불수단의 중전한도 상향 : 1회 200만원→500만원, 1일 1천만원 이내 • (4-3) 금융규제 샌드박스 연계 등 동태적 규제 개선
이용자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 (1)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 외부기관에 예·치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우선변제권 부여 • (2)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 마련 : 영업 확·장경쟁, AI 등 신기술 이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시 행위 규제 확립(중·개판·매광고 책임주제 명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 및 신기술 활용 시 차별금지 및 설명가능성 확보) • (3)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 :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무과실책임) 강화 • (4) 합·병영업양도 등 기준 마련 : 이용자 보호 강화
인프라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	• (1-1)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 은행, 핀테크 기업외 제2금융권으로 참가기관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1-2) 디지털 지급거래 제도화 : 지급지시의 확인·중계, 수취·지급 금액정산(Netting) 등에 전문화된 기관 지정 • (2)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 혁신적 인증수단 판·리안·전보안성 확보 및 비대·면전자적 장치를 통한 신원확인 방식으로 확대 • (3)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 : 국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거래 포섭 • (4)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관리체계 마련 추진 : 플랫폼 영업 규율 마련, 외부장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 사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엄격한 역외 적용,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규제차익 방지
금융안정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	• (1)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선진화 : 사전예방, 제3자 리스크 관·리감독, 조치명령권 도입 • (2)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 : IT·현업부서·정보보·호준법감시·내부감사 계층적 방어체계, CISO 권한 강화, 이사회 책임 강화 • (3)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 지원 : 업무지속계획 강화, 양분리의 규제로 단계적 합리화 • (4)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및 재난대응 관리체계 구축 :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정책협의회 운영

자료: 금융위원회, 재구성

IV. 쟁점 검토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

여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한 내용의 변화와 추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산업1-1)의 지급지시전달업 또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으로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한다. 여기서 지급지시전달업 또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는 이용자의 결제 또는 송금의 지급지시를 받아서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이다. 이러한 마이페이먼트(MyPayment)는 고객계좌와 미보유한 상태에서 고객의 동의로 결제서비스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자금융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스몰라이센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기존 방식에서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간 직접 송금이나 결제로 수수료나 거래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용자는 은행 등에 자금보관하면서 은행 제공 금융서비스 이용가능하다. 마이데이터(MyData) 등과 연계로 조화·이체·결제 과정에서 종합 디지털금융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진다.

<그림 8> 마이페이먼트 도입 전후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여기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중지업)을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간편결제나 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여러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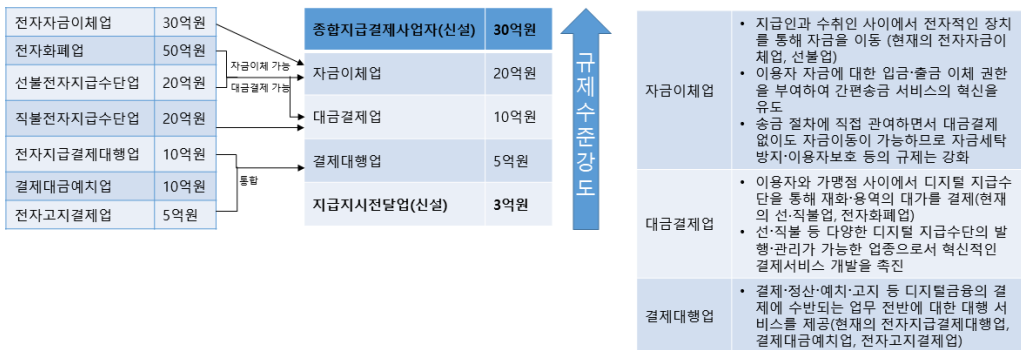
<그림 9>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무 및 관리감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리감독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 가능	전자금융업자 신청으로 금융위 지정 및 감독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 가능(예대 업무 불가)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 가능(예대 업무 불가)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대금결제·자금이체의 한도 상향 등 → 플랫폼 이용자의 다양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대금결제·자금이체의 한도 상향 등 → 플랫폼 이용자의 다양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

자료: 금융위원회, 재정리

(산업 2)에서 전자금융업종이 기능별로 통합되고 간소화된다. 이전에 과도하게 세분화된 7개의 업종을 5개로 단순화한다. 전자자금이체업은 자금이체업으로, 전자화폐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은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업은 대금결제업으로 바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은 결제대행업으로 통합된다.

<그림 10>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간소화



자료: 금융위원회, 재정리

(산업 3)에서는 최소자본금 인하 및 스몰 라이선스 도입으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영국의 전자화폐업 자본금은 4.5억 원, 미국의 자금이체업은 3억 원, EU의 지급지시전달업은 0.7억 원으로, 해외의 주요국에서도 여신이나 수신업무를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금을 낮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자금 보호의무 신설하고,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한도 상향 등을 통해 이러한 최소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 종합자금결제사업자의 경우 예대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수준의 최소자본금으로 설정한다. 또한 영업규모에 자본금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을 도입하고 영업 확장 시에 자본금을 상향 적용하는 슬라이딩(Sliding Scale) 방식도 도입한다.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며 자금이체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를 통해 허가제로 운영한다. 다만 나머지 업종은 등록제로 운영하고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의 문제 때문에 부가조건을 넣는 조건부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산업 4-1)은 소액 후불결제 도입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산업 4-2)는 선불수단의 충전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소액후불결제는 일시적인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신용을 부여하는 기능이다. 선불수단의 충전한도는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를 2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의 결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고객별로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부여가 가능하고 1일 총이용한도는 1천만 원으로 신설한다.

(이용자 2)에서는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여기서는 영업 확장이나 머신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이용에 따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 시에 적용되는 행위규제를 준비한다. 또한 금융사업자와 연계나 제휴 등에 대해 공정한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신기술 이용하는 경우에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한다.

<그림 11> 플랫폼 연계·제휴·광고 등의 행위규칙(좌)과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제도(우) 도입 마련

오인양지: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 결제계좌서 (UI/UX interface) 등을 통해 이용자가 일정, 제조 판매광고의 행위를 주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할 것	
인위적 가입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익하도록 알고리즘 변경, 편향된 상품노출 등의 가입행위 금지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차자금 금지(자금지체·대금결제)
자율선택 보장: 이용자는 희망하는 금융상품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는 불이익 없이 중단 가능할 것	가맹점의 불충분성행위 하위해 대한 주가주 점진(대금결제·결제대행)
공정·정확성 확보: 신기술에 따른 의사결정은 불합리한 차별이 없고 설명가능해야 하며, 편향된 의사결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책임성 강화: 플랫폼의 사설고리점에 의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 이용자의 불충족·이의제기 등이 제각되지 않는 여건을 마련할 것	이용자 자금의 점진 보수 금지(지급지시·전달) 등

자료: 금융위원회, 재정리

(인프라 4)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빅테크가 디지털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이용자 보호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감독 체계와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국내의 기존 금융회사나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 등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그림 12> 빅테크 관리감독 체계(좌)와 공정경쟁 체계(우) 구축

플랫폼 영업 금융 마련	
외부형인 의무화: Big tech의 외부형인 의무화하여 지급·환산·결제·의 과정을 투명화-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이차자금되는 것을 막고 지급 세력의 위험도 예방	규제지위(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Big tech 등에 대한 금융규제도 점검 후 개선
합병·정합·수사권 전가: Big tech의 전파금융업 합병·정합·수사권 전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전가제 도입	
이용자 자금 보호: Big tech에 입회한 이용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여 이용자 자금을 활용한 과도한 사업 확장을 방지	국내 디지털 기업과 금융업 진출에 관한 규제의 일관성도 검토
영역별 역외적용: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전파금융 규제를 통해 글로벌 Big tech의 무분별한 영업을 엄격히 제한	

자료: 금융위원회,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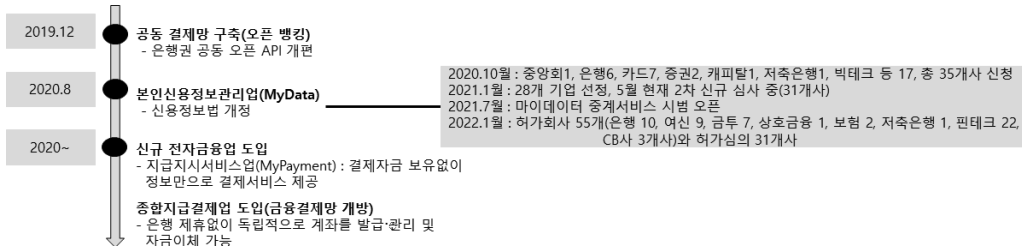
V. 시장의 변화와 주요 쟁점

5.1 시장의 변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에 따라 금융업, 지급결제업, 유통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지급결제 연관산업(신용카드업, 간편결제, VAN, PG), 금융업(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산업), 유통업(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형 및 중소형 커머스), 빅테크 등 핀테크 산업, 기타 온라인 소형 커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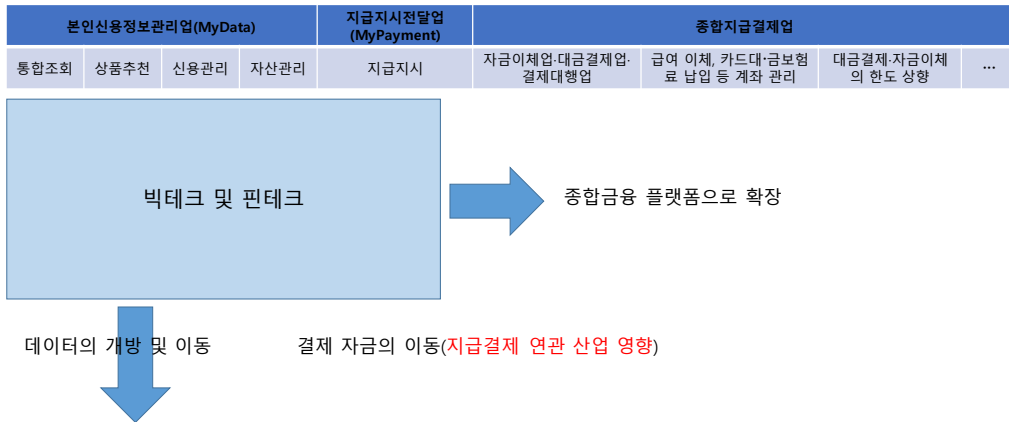
의 로드맵을 따르면 2021년 7월에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는 시범 오픈 중이다.

<그림 1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에 따른 로드맵



또한 제도도입 후 지급결제 연관 산업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업까지 확장되면 빅테크와 핀테크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개방 및 이동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급결제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으로 결제 자금이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제도 도입 후 금융 오픈 플랫폼화



또한 기존 온라인 지급결제시장은 완전히 빅테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오프라인 플랫폼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 빅테크 위주의 온라인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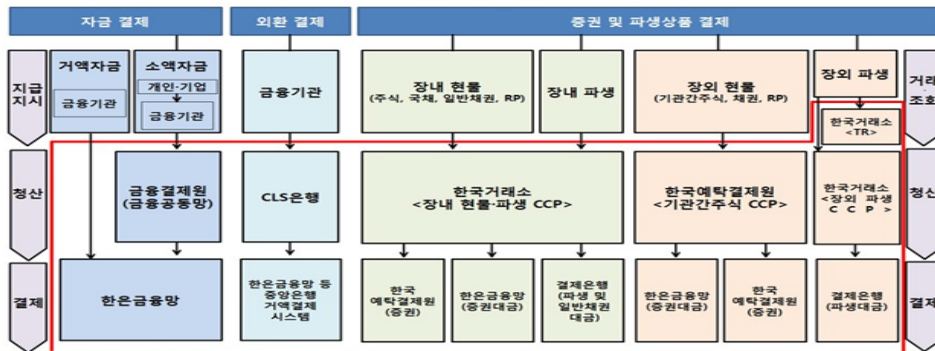
현재		개편 후	
Layer1	Layer2	Layer1	Layer2
각종페이 (77%)	선불충전	각종페이	종합지급결제업 계좌결제
기타결제 (23%)	체크카드		후불결제
	신용카드	기타결제	일반카드
	일반카드		

5.2 주요 쟁점

5.2.1 망안전

망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 1-1)과 (산업 1-2)와 관련되어 있다. 오픈뱅킹이 이미 진행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망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존재하였다. 오픈뱅킹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까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지급결제와 관련된 망 중에서 지급결제와 관련된 망은 소액자금이며 정산은 금융결제원(금결원)의 금융공동망에서 이루어지며 결제는 한은공동망에서 이루어진다. 전자금융공동망은 한국은행과 상업은행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회원 간 통신망이다. 여기서 회원은 기존의 한국은행과 상업은행이며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소규모의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이 접속하여 범위가 확대되면 전자금융공동망은 안전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자율규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금융공동망의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공동망 관리를 위한 자율규약도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지급결제에 관련하여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BIS 산하 위원회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도 자율규약을 행정법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 한국은행의 업무는 청산(기간관 대차해소) 이후 차액결제를 하지만 법이 아닌 사적 자치규약으로 해소하며 증권거래는 청산 후 자본시장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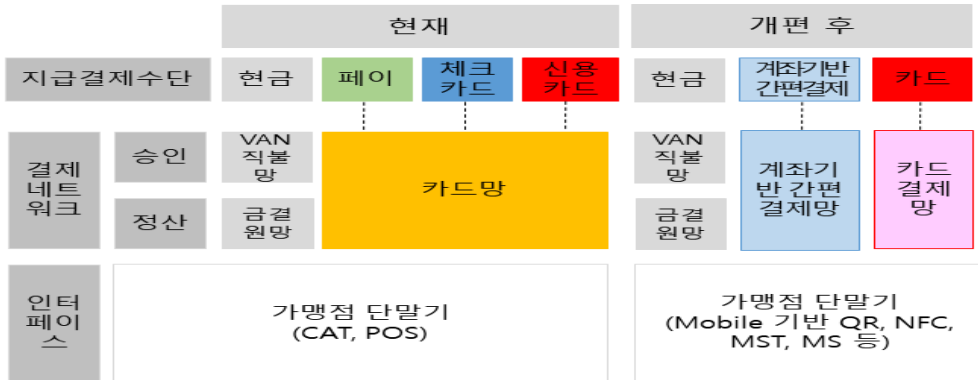
<그림 16> 우리나라의 지급지시, 청산, 그리고 결제 체계도



주: 빨강선내가 금융시장 인프라(FMI)에 해당
자료: 한국은행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결제플랫폼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현금, 페이,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망과 개편 후에 계좌기반 간편결제망이 도입될 수 있다. 여기의 망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오프라인 결제플랫폼의 변화



5.2.2 기존사업자 배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도입될 초기에 빅테크와 핀테크에게 사업을 열어주면서 기존사업자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물론 현재는 기존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에도 기존사업자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만일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이러한 사업을 겸영업무로 영

위하지 못한다. 동일 기능이나 동일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에게 사업을 열어주면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금융회사에 대해 차별적 기회 부여하는 것은 기어올린 운동장으로 볼 수 있다.

대안으로 기존 마이데이터 신청회사와 마이페이먼트를 연계하는 사업에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높이고 카드사 등의 기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에 관한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만일 카드사 등과 같은 기존 금융회사의 앱 등에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익 제고가 가능하고 카드사 등의 기존 금융회사는 법에 따라 영업질서 및 건전성 유지, 정보보호 의무 준수 등 타 사업자 대비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관된 종합지급결제업에 준비가 된 일부 카드사와 자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3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에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없는 여신업 진출이며 신용카드 결제사업자 이전에 불과하므로 소액후불한도 부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액후불업을 도입하고 스몰라이센스를 통해 빅테크사 대상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대출 증가 효과와 연체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자격이 미충족되는 고객 대상으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한도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개인은 신용카드 업권내에서 최대 2매(최대 한도 60만 원)까지만 발급하도록 규제 중이며 한국신용정보원 통해 발급사실을 카드사간 공유를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약 6%로 신용카드 평균 연체율인 1.3%대비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소액 후불결제의 연체율이 낮게 나오더라도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후에 상당히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가계의 연체를 유발하고 그 규모에 따라 결제산업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기반 결제는 가맹점 입장에서 비용이 저렴하고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 유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사 고유업무인 신용한도를 빅테크 업체에게 부여할 경우 리스크가 수반되는 신용(credit)기반 결제가 단순한 사업자간의 이전(신용카드사에서 빅테크업체) 효과만 발생할 뿐, 결제산업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나 소비자 대상 결제수단 변경 따른 추가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스몰라이센스 통해 기존 신용카드사 허가 및 업무영위 기준과 달리 대폭 완화된 자격기준을 갖춘 빅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경우, 결제시장에서의 신용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을 고려, 그 한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신용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BIS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적

용하는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업체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한도와 결제액은 매우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2.4 금융시장에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

빅테크와 핀테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과 판매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업과 이와 관련된 업종 전반으로 진출하고 있다. 고객 채널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에 있어 상품의 노출 우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 지배적 우월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해상충)이 있다. 금융회사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눈치를 보거나 매우 높은 마케팅 비용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과거 주요 포털 서비스사는 언론 기사 정보 우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으며, 결국 고객 주도의 우선 순위 결정 방식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추진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판매를 담당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판매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금지 행위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이루어지면 불공정 행위, 불공정 판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제조 및 판매를 분리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빅테크와 핀테크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판매자의 법적 지위, 의무, 그리고 금지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빅테크사가 임의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노출 순서, 빈도 등을 조정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하며 선택권은 오로지 고객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5 국제기준의 준수

빅테크와 핀테크의 시장 진입 후,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시, 핀테크사는 고객확인 제도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핀테크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독일 Wire Card)등을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핀테크사의 제도권 편입 및 관리감독 강화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대안으로 금융업과 이와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회계관리 감독 등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권으로 편입이 필요하며,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 건전한 금융산업 촉진 등을 위하여 빅테

크와 핀테크 등에도 기존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 등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 상품 판매를 수행 또는 중개하는 회사인 경우에 2021년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5.2.6 정보독점의 문제

정보 독점이나 비대칭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사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서 상행위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18항)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정보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통신판매나 중개업을 계열사로 하는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거래업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 시 정보 독점 및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통신판매나 중개업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5.2.7 글로벌 기업 진출 문제와 규제방향 충돌

국내 기업에게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국내외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능하며 독과점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삼성전자(제조), 구글(검색엔진), 아마존(전자상거래) 등이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커진 파이가 아니라 같은 파이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된다. 글로벌 기업이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독과점 구조로 변화 가능성 높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방향과 맞지 않다. 공정위는 갑질 논란 등으로 플랫폼 공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지급결제업까지 신설하여 플랫폼 공룡에 주는 경우 공정위의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

5.2.8 동일서비스와 동일규제 측면에서의 수수료율

신용카드는 2007년 이후 13차례 수수료율 인하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동일 규제로 기존 카드사와의 형평성 확보,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각종 페이를 활용하는 경우에 내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지급결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각종 페이는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PG이므로 요율 높은 상황이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단순 결제대행 모형이 아니라 주문서 접수, 관리, 발송, 교환 등 여러 기능을 제공하므로 카드 수수료율과 단순히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신용카드 역시 신용판매에 대한 요율 적용이므로 수익

모델이 아니다. 따라서 동일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기존의 금융회사에게도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과 같이 수수료를 규제를 과감히 삭제하거나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과 같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8> 카드(2021.12.23)와 페이 수수료율 비교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요율		3억원 미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이상	30억원 이하 범위
신용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신용카드	0.80%	1.30%				
		3~5억원	1.1%	카카오페이 직불	1.02%	1.23%			2.28%	1.02%~2.16%
		5~10억원	1.4%	카카오페이 카드	1.04%	1.87%			2.50%	1.04%~2.39%
		10~30억원	1.6%	네이버페이 계좌이체	1.65%	1.65%	1.65%	1.65%	1.65%	1.65%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평균 1.90%	네이버페이 카드	2.20%	2.75%	2.86%	3.08%	3.74%	2.20%~3.08%
체크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100~500억원	평균 1.95%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	1.00%	1.00%	1.00%	1.00%	1.00%	1.00%
		500억원 이상	개별 협상	네이버페이 휴대폰결제	3.85%	3.85%	3.85%	3.85%	3.85%	3.85%
		~3억원	0.25%							
		3~5억원	0.85%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5~10억원	1.0%							
		10~30억원	1.25%							
		30억원 초과	평균 1.45%							

자료: 금융위원회, 언론종합

5.2.9 일부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기업의 시장 우회 침투

대부분의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사업을 영위할 때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을 시작으로 전자고지결제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을 제외한 4개 분야만 등록해 선불충전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비단 빅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핀테크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빅테크나 핀테크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통장 등의 개설이다. 통장 등을 개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은행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상품구조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 계좌로, 법으로 정해놓은 5,000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후불결제 기능에 있어서 소상공인 소액대출 서비스 등도 불완전 판매가 될 수도 있다. 자신들의 입점 고객에 대해 신용도를 평가하여 연계된 금융회사가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유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회사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고객에게 약관동의를 받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3,500만 명 플랫폼 가입자를 이용한 무리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보험시장에서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의 제조와 판매 분리 및 중개료율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일부 빅테크는 은행 설립이나 증권사 등을 인수하여 경쟁에 뛰어 들었다면 일부 빅테크는 포털사업을 활용해 제휴 모델로 시장에서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 약 11%를 중개료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로 보험 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개별회사의 홈페이지나 GA 등을 통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면 중개료는 더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에게 요율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광고료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판매수수료는 14%로 상한선이라도 있지만 광고료는 상한선이 없는 상황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봉(202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시장의 변화」,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발표자료.
- 금융결제원(2018), 「유럽연합의 PSD2 시행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보안원(2018), 「EU PSD2 규제기술표준(RTS) 및 일본 은행 오픈API 보안 원칙 소개」.
- 금융위원회(2018),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8),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8),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
- 여신금융협회(2015),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 최동준 · 김두연 · 김상봉(2020), “The Innov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Online Civil Certification Issuance Service”, 「신용카드리뷰」, 14(4), 136-150.
- 최동준 · 김상봉(2019), “전자문서지갑과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도입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리뷰」, 13(4), 71-104.
- 한국은행(2020), 「2019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2021), 「2020 지급결제보고서」.
- European Banking Federation(2016), *PSD2 Guidance: Guidance for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 European Commission(2007), *Directive 2007/6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 European Commission(2016), *eIDAS Regulation*.
- European Commission(2020), *Impact assessment of the Digital Services Act(1, 2)*,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European Commission(2020),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 European Commission(2021), *New Ru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Questions and Answers*.
- European Law Institute(2019), *Model Rules on Online Platforms*.

Revision of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nd Changes in Financial Markets

Cheon Woo Lee*

CEO, Winnereye Co., Ltd., Gyeonggi-do, Korea

Sang Bo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Jae hyun Kim***

MA Student, Department of FinTech,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vision of the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We also examine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when the amendment to the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s passed, as well as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traditional financial market. The amendment to the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rgely includes tasks for industry, users,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stability, and details are included in the tasks. Among these details, network safety, exclusion of existing businesses, provision of small amount deferred payment function, separation of manufacturing and sales in the financial market,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information monopoly problem, global company entry problem and conflict of regulatory directions, merchant fees in the side of same service and same regulation, and there may be problems such as the penetration of some bigtech or fintech companies to bypass the market. Therefore, it seems that a part of the law or a part of the related law needs to be changed for the stability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or financial market, and for consumer protection.

Keywords: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PSD2, Fintech, Regulation

<최초 투고일: 2022년 4월 4일>, <수정일: 2022년 6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2년 6월 29일>

* Address: Sanggdong 104, 97, Seongsin-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10483, Korea, E-mail: dcd88@naver.com, Tel: +82-2-3275-3780

** Address: Research Building 505, 116 Samseongyo-ro 16gil, Seongbuk-gu, Seoul 02876, Korea, E-mail: brainkim75@hansung.ac.kr, Tel: +82-2-760-8038

*** Address: 25-2, Sungkyunkwan-ro, Jongro-gu, Seoul, Korea, E-mail: jaejaee@g.skku.edu, Tel: +82-2-760-0736